2025 성장기 기초예술 기업 지원 공모 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기초예술분야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자생력을 제고하는 **<2025 성장기 기초예술 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술 전문성 및 적극적인 실행능력을 겸비한 기초예술분야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 모 명) 2025 성장기 기초예술 기업 지원
- ㅇ (사업목적) 기초예술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지원 및 육성
- (지원취지)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창·제작 지원이 아닌 예술기업의 경영개선·안정화와 수익 창출 기반 조성 목표

경영상 애로사항과 문제 상황 개선 또는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금과 성장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업진단, 교육-컨설팅, 성과평가 등 사업 전 과정에 필수 참석해야 합니다.

o (신청대상)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예술분야 7년 이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

신청대상 예시

- ▲ 기초예술 공연 기획·제작사
- ▲ 미술 전시기획사 및 미술품 판매·유통사
- ▲ 문학 전문 기획·제작사

- ▲ 예술인(공연예술인·미술작가·문학인 등) 육성 매니지먼트사
- ▲ 공연/미술/문학 전문 홍보·마케팅사 등
- ※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업일이 공고일(2025.3.4.)기준, 7년 이상 (~2018.3.4.)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 ※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 투어, 단순·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
- o (지원분야) 연극·뮤지컬, 음악(클래식, 국악), 미술, 무용, 문학 등 기초예술
- o (협약기간) 2025년 5월 ~ 11월 (약 7개월)
- (선정규모) 20개사 내외
- o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및 성장프로그램
- 자금지원 : 기업별 50백만원 (자부담 10% 필수, 총사업비 정산 필수)
- 성장프로그램 : 기업 맞춤 컨설팅·교육 지원, 유통·판로 개발 지원
- (신청기간) 공고일 ~ 2025년 3월 31일(월), 15:00
-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1. 자금지원	○ 사업화 자금 50백만원 (자부담 10% 필수, 총 사업비 정산 필수) ※ 총 사업비(100%) = 국고보조금(90%) + 자부담금액(10%)			
2. 성장프로그램	컨설팅 · 교육	○ 대표자 및 실무자 맞춤 역량 고도화 지원 · (기업경영 등) 세무회계 창업, 인사노무, 법률, 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등 · (기업진단에 따른 판로개척 교육 및 컨설팅) 시장조사 및 프로모션,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시행, 고객 데이터 구축·활용 등		
★ 참여 필수	유통 · 판로	○ 유통 판로 개발 지원 ・예술기업 맞춤형 고객 및 협업 파트너 발굴 ((예)비즈니스 상담회, 기업 홍보자료 리뉴얼 등) 통한 기업 홍보 기회 지원		
	※ 기업진단, 공통 교육 및 기업별 컨설팅 등 총 4회(온·오프라인) 내외 ※ 유통 판로 개발 지원 기업별 총 1~2회 내외 ※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기업에 한해 시기/기간 추후 별도 안내			
3. 성과관리	○ (목표설정) 지원사업 전, 후 기업목표 설정 및 관리 ○ (성과평가) 사업수행 월 및 중간점검, 최종성과점검, 우수사례 선정			

○ (사업화 자금 편성)

목	세목	세부내용	
인건비 (110)	보수(0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총사업비의 30% 이내 편성 가능) ※ 대표 및 임원 제외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학술연구, 운송비, 광고매체 수수료, 홍보물 제작비, 지식재산권(IP) 등록비 등		
	임차료(03)	행사 대관 및 장비 등 임차료 ※ 사무실 임차비 제외	
	일반용역비(04)	외부 대행용역비(제품 및 서비스 개선, 홍보마케팅, 시장조사, 촬영 및 영상 제작 등)	

- ※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2회 분할교부
- ※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한 예산 및 정산 진행 필수
- ※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정 회계법인의 회계검증 진행
- ※ 사업비 세부편성 기준은 "신청서 서식의 <참고 2>" 총사업비 편성기준 참조

○ **(사업추진 절차)**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세부 내용
공모개시	~3.31.(월) 15:00까지	o (센터) 공모 실시 및 신청 접수 o (선정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서류 준비 후 e나라도움 통한 신청
심사·선정	4월~5월	(1차)서류심사 → (2차) 발표 심사 → 최종 선정
선정워크숍, 기업진단, 지원금 교부	5월~6월	▼ ○ (선정워크숍) 사업 및 프로그램 소개, 협약 체결 등(1회) ○ (기업 진단) 성장프로그램을 위한 기업경영 진단(기업별 1회) ○ (지원금 교부)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금 교부(1차)
성장프로그램, 중간점검, 지원금 교부	6월~11월	▼ ○ (성장프로그램) 교육 및 컨설팅, 유통판로 개발 지원(6개월) ○ (중간점검) 사업수행 및 실적 현황 관리 등 중간점검 ○ (지원금 교부)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금 교부(2차)
결과보고	11~12월	▼ ○ (성과평가) 최종 실적,성과 취합 및 성과공유회 ○ (사업결과보고)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이나라도움 정산·실적보고 및 회계검증)

3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 ~ 2025년 3월 31일(월) 15:00까지

※ e나라도움 시스템 `25.03.31.(월) 15시00분 정각 접수 자동 마감(신청서 제출 버튼 자동 비활성화)

- ※ 접수 마감일 이후 최종 선정 수의 1.5배 미만 접수 시 접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제출 외 e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함
-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주의사항)
 - 신청·접수 미감(2025. 3. 31.(월), 15:00까지) 기한 내 e나라도움 시스템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함 (15:00부터는 입력 불가)
 - 신청·접수 마감(2025. 3. 31.(월), 15:00까지) 당일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속 및 제출 지연 등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사전 제출 필수
 - ※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문의, 장애신고 등 문의
 - ※ 신청자의 실수로 인한 신청오류(e나라도움 지원사업 신청 선택 오류, 지원 신청서 오제출 등)는 심 사에서 자동 제외합니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	파일명<예시>	첨부파일
	* e나라도움 공모신청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	e나라도움
필수	1. 지원신청서 양식 1부 * 반드시 제공된 양식을 활용, 한글(HWP)파일 제출 권장	1. 지원신청서_기업명	HWP
	2. 별첨자료 일체	2-1. 별첨1-4모음_기업명	
	⋆ 세부내용은 제공된 붙임파일 "별첨양식 모음" 참고	2-2. 별첨 5_기업명	
	3. 증빙서류		
	3-1. 사업자등록증	3-1. 사업자등록증_기업명	
	3-2.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만 해당(말소포함, 전체페이지 제출)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포괄승계계약서 제출 필수	3-2. 법인등기부등본_기업명	
	3-3. 2023~ 2024년 재무제표 각 1부 * '24년은 가결산 자료 제출 가능 * 재무제표 없을 시, 수지계산서 작성하여 제출 (수지계산서는 붙임파일 중 '별첨양식 모음' 별참6. 서식 활용)	3-3. 2023 재무제표_기업명 3-3. 2024 재무제표_기업명 3-3. 2024 기타매출증빙_기업명	PDF
	3-4.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사실증명서는 홈텍스 신청 후 3시간 이후 발급 가능한 관계로, 사전 발급 필수	3-4. 총사업자등록내역	
선택 (해당시)	4. 사업소개서 (표지 포함 <u>10p이하</u>) 5. (해당시) 기타 지정인증서 상장 등 심의 참고자료 등	4. 사업소개서_기업명 5. (추가증빙)서류명_기업명	

- ※ 모든 서류는 공모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 ※ 제출파일명은 <예시>에 따라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_기업명]으로 제출

4 제외 대상

- ① 당해연도(202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있는 기업
- ②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기업)

< ②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④ 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
-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
-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⑤,⑥의 경우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⑦ 「근로기준법」제43조 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⑧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기업)
- ⑨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기업
-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자(기업)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⑪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5 선정기업 의무 및 역할

① (지원 및 수행 일반)

- 선정기업은 선정통보 일자로부터 협약체결 및 교부신청을 각각의 지정된 일자 이내에 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단, 공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승인되는 경우는 제외)
- 선정기업의 사업 시작일은 센터와의 협약체결일로 함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후 중도포기 시 향후 동 지원사업 신청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당해연도(2025)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 조치되며, 이후 동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취소(사업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서 및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가이드」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 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공모신청 시 계획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선정기업은 센터와 운영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3조의 2,「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②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지출마감 기한 준수

- 집행가능기간 : 교부일 ~ 2025년 11월 14일(금)까지
- 제출서류 : 사업종료 이후 1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관련 결과물 일체)제출
 - * 교부 확정 통지 이전 집행 건 및 집행마감 후 집행 건에 대해서 불인정 처리함
 - * 사업종료 이후 이나라도움 정산처리 진행 및 회계검증 필수

③ (신청 시)

- 신청기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마감 이후 변경이 불가함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 과정에서 기업 대표의 직접 참여 및 발표가 필수(본 지원사업 담당 실무자 동석 가능) 이며 불참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선정 후 공모신청서 제안 성과목표는 개선을 위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단순·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

④ (사업수행 시)

- 자부담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집행 내역 정산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선정 이후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을 센터 및 운영사와 협의 후 사업내용을 확정하여 교부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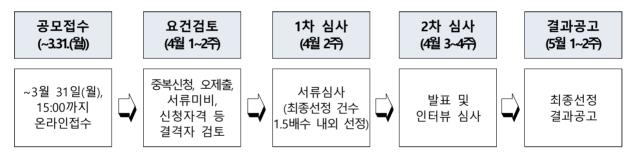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자부담 및 국고보조금 집행 필수
- 사업 선정 이후 성장프로그램 등 전 과정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기업 성장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 중단이 가능하며, 기교부보조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사업기간(협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가능함
- 교부 이후에도 신청사업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이 있을 경우, 보조금 반납 조치함
- 본 사업의 보조금은 타 정부지원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전에 센터 승인 없이 임의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지원금(자부담 포함)은 불인정될 수 있음

⑤ (사업 종료 후)

- 본 지원을 통한 해당 분야 고도화 또는 파급효과를 통한 기업의 수익 다각화 등 관련 정량·정성적 성과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설문, 조사, 정보 제공 등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후에도 한국재정정보원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모니터링에 의한 보완·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응하여야 함

6 심사 및 선정

o (심사일정) 2025년 3월 4주 ~ 5월 1주(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과 심사 대상자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 예정
- ㅇ (심사방법) 외부 전문가에 의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 (심사기준) 사업계획서 등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① 기업역량, ② 사업 전문성,
 ③ 제안사업 타당성, ④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7 문의

- (e나라도움 신청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ㅇ (사업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 혁신성장팀
 - (전 화) 02-708-2277
 - ※ 전화 문의 : 평일(월~금) 10:00~17:00 중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newvalue@gokams.or.kr
-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 지원 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가 취해질 수 있음